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영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67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3.

발의자 : 윤영석 · 박덕흠 · 최형두
정동만 · 이종배 · 안철수
조경태 · 김태호 · 박대출
임종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5조에서는 농업인이 사용하는 비료, 농약, 농기계 및 어업용 자재 등 농·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제106조에서는 수입하는 농·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. 이 제도는 1989년 도입 이래 농수산물 생산 기반 유지, 농업 경쟁력 제고,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.

2023년 기준 농업경영비 중 재료비 비중은 41.8%이며, 이 중 상당 부분이 비료·농약·농기계 등 농업용 기자재입니다.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제도를 폐지하면 경영비 급등하여 이는 농산물 생산 단가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.

또한 유럽,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농·어업 투입 자재, 종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해주어 농·어가 부담을 완화합니다. 이에 농·어용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 및 면

세 제도를 유지,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(안 제105조제1항 안 106조제2항)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2025년 12월 31일까지”를 “2028년 12월 31일까지”로 한다.

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제9호는 2025년 12월 31일”을 “제9호는 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(零)의 세율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 제5호 및 제6호는 <u>2025년 12월 31일까지</u>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</p> <p>1. ~ 6. (생 략) ② (생 략)</p>	<p>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8년 12월 31일까지</u>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</p> <p>① (생 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<u>제9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</u>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,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</p>	<p>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<u>제9호는 2028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 -----</p>

에만 적용한다.	-----.
1. ~ 22. (생략)	1. ~ 22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